

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- 영업정지 2개월

제재처분 적법: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. 4. 28.자 2019-18745 재결



1.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

청구인들은 '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,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'라는 취지의 주장 - 실제 소량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- 2개월 영업정지, 폐기처분, 과징금 부과처분

2. 중앙행정심위 결정 요지

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

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(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),

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·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,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,

청구인들이 2010. 9. 8.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을 등록하여 상당 기간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,

청구인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 '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', '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', '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'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, 청구인들의 주

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따라서,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
첨부: 중앙행심 재결문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